

1910년대 초반 석장둔 인근 간척지 소유 양상*

김한빛**

초록 이 글은 현재 시흥시 관내에 있는 소위 석장둔 인근 간척지의 1910년대 소유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간척지에서 토지 소유가 소수 지주에게 집중되는 모습과 비옥도와 토지 소유 상태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석장둔 인근 간척지는 바다와 구릉에 둘러싸여 있고 경작지 대부분이 논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관련 자료가 풍부하여 1910년대 소유 상황을 확인하기에 용이하였다. 해당 지역 토지의 과세가격과 비옥도는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서울에 사는 부재지주가 면적 기준 간척지 내 토지 과반을 소유하고 있었다. 토지 소유는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었으며, 특히 당대 권력자인 순헌황귀비 엄씨는 영역 내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함과 동시에 다른 지주들보다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었다. 간척지가 아닌 인근 지역과 소유 양상을 비교해 볼 때, 이와 같이 토지 소유가 소수 지주에게 집중되는 현상은 석장둔 인근 간척지의 독특한 현상으로 여겨진다.

주제어 시흥, 간척지, 석장둔, 호조독, 호조벌, 부재지주, 비옥도, 과세가격, 순헌황귀비, 윤규섭, 전명기

* 본 논문은 2023년 11월 2일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시흥시 인문도시사업단이 주최한 제18회 인문주간 학술대회 “근현대 시흥의 변화와 발전”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한 집담회의 성과임.

서울대학교 역사학부 강사 방범석·박정민이 『토지조사부』 자료 입력을 도와주었다. 지면을 빌려 부족하게나마 사의를 표한다.

시흥시청 토지정보과 김경민·이재원, 문화예술과 김치성 및 토지정보과·문화예술과·평생학습과 소속 다수 직원의 도움을 받아 그동안 열람하기 어려웠던 『토지대장』(舊) 실물 및 스캔 파일을 열람할 수 있었다. 지면을 빌려 부족하게나마 사의를 표한다.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1. 서론

조선 정부는 개간을 장려하여 농토를 넓히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서해안 각지에 벌어진 간척지 조성 사업 역시 그러한 정책의 일환이었다. 정부는 독을 쌓아 토지를 만들고, 세금 감면과 3년 이상 경작 시 토지 소유 등 혜택을 주어 간척지에 농민들을 모으려 했다. 현 시흥시 지역에 있는 소위 석장둔 인근 간척지는 그러한 배경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성되었다.

하지만 간척지 운영은 당국의 뜻대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간척지를 개간하려는 농민 앞에 여러 장애물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간척지에는 소금기가 가득했다. 게다가 범람이나 조수간만에 의한 피해도 심심치 않게 닦쳐왔다. 겨우 경작에 성공하면 소유권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개간 전 미리 간척지 입안을 확보해 두었던 부재지주들이 등장한 것이다. 이는 부유한 소수 지주가 토지를 대규모로 집적하기에 유리한 상황이었다.

또한 석장둔 인근 간척지는 조성 과정부터 각 기관과 궁방이 개입하여 수조권 등 각종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궁장토와 둔토가 많은 지역이었다. 대한제국 말기부터 일제시대 초까지 정부와 각 기관이 소유한 역둔토는 일괄적으로 정리되었다. 그 과정에서 중답주 권리가 부정되고 토지에 대한 개인 소유권이 문서로 확정되는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둘 때, 일제시대 초 간척지 소유 양상의 특성을 살펴보는 작업은 조선후기 정부 기관 및 궁방이 권리를 가지고 있던 토지의 최후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다.

간척지 소유 특성에 대해 언급한 최초 연구자는 송찬섭이다. 그는 17~18세기 수리기술 발전 및 산간 개간지 포화로 인하여 저지대 개간이 활발해졌다고 보았고, 간척 역시 그 흐름의 일환이었다고 하였다. 그는 간척지 개간이 농민 양극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간척 사업을 하기 위해 서는 입안, 절수 등 해당 지역 토지에 대한 권리를 선점해야 했는데, 부유층

이 이 권리를 갖기에 유리했다는 것이다.¹

양선아는 조선시대 토지소유권 연구에 등장하는 관둔전과 궁방전 사례들이 대부분 간척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조선후기 각 기관이 세원이나 수입을 스스로 마련해야 했으므로 소유권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갯벌이나 하천변 간척에 관여하여 권리를 행사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기존 연구 비판을 토대로 조선후기 간척기술과 해안 환경, 그리고 해안을 간척지로 개간하고자 했던 정치권력의 관계를 연결하여 조망했다.²

한편, 구한말까지 각 기관이나 궁방이 소유권 및 수조권을 가지고 있던 토지에 대해 소유권 분쟁이 발생한 사례와 원인에 주목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일제가 역둔토조사과정에서 국유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에 목표를 두었다는 견해가 있었다.³ 또는 대한제국 정부가 역둔토 사정 기준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역둔토 국유화가 진행되어 분쟁이 발생했다는 견해도 있었다.⁴ 이상의 연구는 주로 역둔토 사정 및 토지조사사업 과정에서 대한제국 정부·통감부·조선총독부가 추진한 정책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실제 조선시대 기관이 권리를 가지고 있던 각 지역의 소유권 확정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데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이영호는 석장둔 인근 간척지와 관련된 문헌이 풍부한 점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 간척지 형성부터 20세기 토지소유 양상까지 장기간의 변화를 추적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조선후기 중앙정부가 직접 간척을 진행

-
- 1 송찬섭(1985), 「17·18세기 신전개간의 확대와 경영형태」, 『한국사론』 12.
 - 2 양선아(2010), 「조선후기 간척의 전개와 개간의 정치: 경기 해안 간척지 경관의 역사 인류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 박진태(2004), 「일제의 역둔토실지조사와 분쟁지 문제」, 『역사문화연구』 20; 박성준(2018), 「통감부시기 궁방전의 소유권 판별과 조선토지조사사업 국유지분쟁의 원인」, 『한국문화』 83.
 - 4 이영호(2010), 「한말~일제초 근대적 토지소유권의 확정과 국유·민유의 분기」, 『역사와 현실』 77.

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민간 소유권과 별도로 기관이 갖는 수조권이 발생했다. 다만 일제의 역둔토 정리 및 토지조사사업 과정에서 소유권 관련 분쟁이 모두 해결되었고, 토지 대부분이 민유지로 설정되었다. 또한 당시 토지 납세 통계와 비교할 때 석장둔 인근 간척지에서 보이는 토지소유 양상은 1920년대의 일제시대 한반도의 소유 양상과 유사하였다.⁵

이영호는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소유자 분석 시 석장둔 인근 간척지 뿐만 아니라 간척지가 포함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저자의 언급대로 간척지 인근 지역도 간척지 농업에 영향을 받는 생활권이었음을 감안하면 의의가 있는 분석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식으로 분석한다면 간척지가 아닌 영역도 분석 대상에 포함되므로 간척지 특성을 반영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듯하다. 또한 당시 토지 납세 통계는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토지를 소유한 지주를 중복반영하였다.⁶ 즉, 대지주가 가진 토지 면적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통감부의 역둔토조사 및 1911년까지의 토지 신고를 바탕으로 작성된 『토지조사부』 및 『원도』를 대조하여 분석 대상지를 최대한 간척지 영역 그대로 설정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간척지가 아닌 인근 지역의 『토지조사부』와 비교하여 간척지에 드러나는 토지소유 특성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비옥도가 소유 양상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비옥도 판단 기준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1910년대에 작성된 『토지대장』상의 과세 가격이다. 다른 하나는 간척지 조성을 위해 설치한 소위 호조둑과의 거리이다. 과세가격과 호조둑과의 거리 및 소유자 현황을 분석하여 비옥도에 따른 소유양상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병합'⁷ 직후 석장둔 인근 간척지 소유 양상을 살펴

5 이영호(2018), 『토지소유의 장기변동: 경기도 시흥 석장둔의 250년 역사』, 경인문화사.

6 小早川九郎 외(1960), 「제4표 지세납세의무자 면적별 인원(1921~1936)」, 『朝鮮農業發達史: 資料編』, 友邦協會, 이영호(2018) p. 233 재인용; 장시원(1989), 『일제하 대지주의 존재형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후기 간척지는 다른 경작지와 달리 주로 관청이 조성하고 경영해 온 토지인 경우가 많으며, 부유한 지주들이 소유권을 주장하기 용이했다. 따라서 소유 양상이 다른 지역 토지와 차이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병합’ 직후 토지소유자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최초 문서인 『토지조사부』를 통해 간척지 소유 양상의 특징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석장둔 인근 간척지는 그 영역을 타지에 비해 분명하게 유추할 수 있는 곳이다. 따라서 토지 관련 문서에서 해당 영역 내용만 추려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러한 분석 방법은 한계를 갖는다. 일제시대에 작성된 문서인 만큼 조선후기 소유권 변동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다. 물론 대상지역인 석장둔 인근 간척지에는 18세기에 별도로 작성된 양안은 물론 광무양안도 남아있다. 그러나 양안에 실소유주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⁸ 따라서 조선시대 양안과 일제시대 토지대장 각 필지를 연결하여 소유관계를 따지지 않는 이상 양안만으로 소유관계 변화 양상을 밝히기 어렵다.⁹ 다만 대상 자료는 ‘한국병합’ 직후인 1911년경에 완성되었으므로, 대한제국 정부와 통감부가 진행한 역둔토 정리, 그리고 총독부 토지조사사업 결과를 반영한 가장 앞선 시기의 문서이다. 이는 간척지 역둔토 정리 결과를 지역 수준에서 살펴볼 수 있는 실례가 될 것이다.

7 일제시대 당시에 ‘한국병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의미로 따옴표를 사용하였다. 한성민, 『일본의 한국병합 과정 연구』, 경인문화사, 2021을 참고하였다.

8 김소라(2021), 「양안의 재해석을 통해 본 조선후기 전세 정책의 특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197-198.

9 김건태, 김소라 등이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양안과 일제시대 토지장부를 연결하여 분석하였다. 김건태(2018), 『대한제국의 양전』, 경인문화사; 김소라(2021).

2. 지역 개관 및 연구 방법

연구 대상지역인 석장둔 인근 간척지를 소개하기에 앞서, 시흥시 행정 연혁을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현재의 시흥시는 조선후기 안산군 남부 5개면인 군내면, 잉화면, 초산면, 대월면, 마유면과 인천도호부 3개면인 신현면, 전반면, 황등천면에 해당했다. 안산군 5개면 중 1914년에 군내면과 잉화면, 대월면 일부 지역은 현 안산시에 편입되었으며, 그 외 지역은 수암면과 군자면으로 재편되어 시흥군에 편입되었다. 같은 시기 인천도호부에 속한 3개 면은 소래면으로 통합되어 부천군에 속하였다. 수암면과 군자면, 소래면은 1973년 시흥군으로 통합되었고, 현 시흥시까지 그 영역이 이어지고 있다.¹⁰

이 중 대상지역인 간척지 영역은 1914년 당시 부천군 소래면 일부 지역과 시흥군 수암면 일부 지역이다. 현재의 안현동, 매화동, 금이동, 도창동, 미산동, 은행동, 하상동, 하중동, 광석동에 걸쳐있는 경작지가 그 대상이다. 1914년 해당 지역은 리 단위 구역이었으나, 모두 동일한 지명을 가지고 있었다. 예컨대 안현동은 안현리, 매화동은 매화리인 식이다. 현재 항공사진과 1910년대 지형도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그림 1], [그림 2]와 같다.^{11,12}

이 지역은 20세기 초반 하더라도 소위 석장둔 제방을 두고 바다 및 염전과 접한 땅이었다. 지속적인 간척 사업 결과 현재 해안선은 제방에서 수 킬로미터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해당 지역 대부분의 토지가 경작지로 쓰이고 있다.

이 지역은 17세기 이후 간척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이다. 숙

10 차선혜(2007), 「근대적 개혁과 지방제도 변화」, 『시흥시사3: 시흥의 근현대』, 시흥시사편찬회, pp. 1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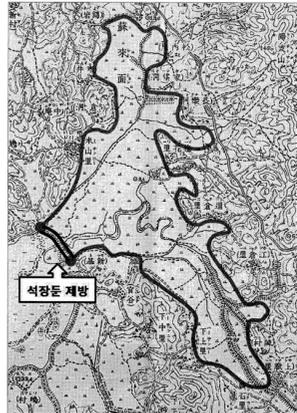
11 김형수(2019), 「시흥시, 300년 역사 ‘호조벌’ 가치·의미 공유한다」, 중부일보 웹페이지, 『중부일보』,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7581>(검색일: 2024.6.19.).

12 『朝鮮五萬分之一地形圖』 인천(서울8호), 이영호(2018) p. 77 재인용.



*외곽선: 저작자 강조

[그림 1] 석장둔 인근 간척지 항공사진



*외곽선: 저작자 강조

[그림 2] 1918년 석장둔 인근 간척지 지형도

종 46년(1720) 인천, 안산 경계지역에 독을 세웠으며, 경종 1년(1721)과 3년(1723) 각각 낭청을 파견하여 실사한 것이 간척 사업의 시작이었다.¹³ 이후 수문을 증설하고 물길을 파내는 등 여러 공사가 이루어진 끝에 경작할 수 있는 토지가 조성되었다.¹⁴

그러나 독을 세워 지은 간척지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관리하기 어려웠다. 간척지가 처음 형성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20세기에 도 내륙까지 잔물이 올라왔다. 은행동 찬우물과 미산동 월촌 현지 조사에 그 실상이 드러난다. 현재 포동 지역에 바닷물 유입을 막는 관문이 있었지만, 이 관문은 바닷물 유입을 완전히 막을 수 없었다. 그래서 추수가 끝난 후에 흙으로 보를 막아 바닷물 유입을 막고 부족한 물을 논바닥에 저장해 두기도 했다.¹⁵ 경작지가 된 지 한참이 지난 최근까지도 논에 우물을 파기 어려울 정도로

13 『承政院日記』 영조 4년(1728) 3월 11일.

14 이영호(2018), pp. 66-70.

15 양선아(2007), 「개간과 토지이용」, 『시흥시사 5: 시흥 농촌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 시흥시사편찬위원회, p. 148.

염분이 많다.¹⁶

게다가 타지에 사는 지주가 간척지 토지를 대규모로 소유하는 문제는 진흙청이 간척지를 조성하지 시작한 시기부터 부각되고 있었다. 영조 20년(1740) 연대기 기사에 따르면, 서울과 지방의 양반과 상민들이 석장둔 인근 간척지 땅을 넓게 점유하고 입안을 받았으며, 타인이 개간하기를 기다렸다가 끼어들어 경작을 금하거나 병작을 요구한다고 하였다.¹⁷ 즉, 간척지가 조성된 초기부터 부재지주들이 토지를 대규모로 소유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지역에 개인 소유주들이 확보한 소유권과 별개로 각 기관이 소유권이나 수조권을 가진 토지도 많았다. 예컨대 용동궁은 이 지역 토지를 구입하여 사음을 두고 토지를 경영했다. 또한 원래 진흙청과 양향청이 가지고 있던 석장둔 수조권은 18세기 말 장용영에 이속되었다. 기관이 가지고 있던 수조권은 다시 총리영에서 선희궁, 내장원으로 이전되었고 최종적으로 대한제국기 역둔토 정리과정에서 사라졌다.¹⁸

본 연구는 20세기 초 석장둔 인근 간척지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20세기 초에 작성된 『원도』, 『토지조사부』, 『토지대장』을 활용했다. 분석 대상 문서는 다음의 과정으로 만들어졌다. 일본은 ‘한국병합’ 과정에서 국유지 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궁방전과 역토, 둔토 등을 국유지로 설정하였다. 한편, ‘한국병합’ 후 총독부는 민간인에게 토지 소유권 신고를 받았다.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시흥군 수암면은 1910년 9월 중순부터 1911년 3월까지, 부천군 소래면은 1910년 11월 중순부터 1911년 1월까지 신고를 받았다. 그런데 국유지로 설정된 과거 궁방전과 역토, 둔토 중 다수 필지는 민간에서 일반 토지와 유사하게 거래되고 있었다. 따라서 『토지

16 이기선·김정환·김현수(2013), 「길마재 이야기」, 『2013 사라져가는 자연마을 조사보고서: 호조별 동편 마을』, 시흥문화원, p. 54.

17 『承政院日記』 영조 16년(1740) 10월 12일.

18 이영호(2018), pp. 66-70.

조사부』 일부 필지에 국유지 통지일과 지역민 신고일자가 나란히 기재되어 있기도 하였다.¹⁹

다만 『토지조사부』에 모든 간척지 필지가 소유자 확정 상태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토지신고 당시 인민들이 석장둔토였던 국유지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준비 중이며, 경기도 당국이 토지를 민간에 환급하도록 협의 중이라는 기사가 있다.²⁰ 이를 볼 때, 석장둔 인근 간척지 역시 『토지조사부』 작성 단계에서 분쟁이 마무리되었거나, 분쟁이 발생하기 전 원만하게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필지 정보는 1910년대 작성된 최초의 『토지대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었다. 확보한 『토지대장』을 살펴보면, 분석 대상 필지 모두 메이지 43년(1910) 및 44년(1911)에 최초로 등록된 것으로 나오며, 필지 번호, 소유자, 필지 면적이 『토지조사부』의 내용과 일치하였다.²¹

총독부는 토지 소유권 신고를 받은 후 해당 지역을 측량하여 『원도』도 작성하였다. 『원도』에 따르면, 안현리·매화리·미산리·은행리는 1911년 3월, 금이리·도창리는 같은 해 4월, 광석리는 같은 해 6월, 하상리는 같은 해 8월, 하중리는 같은 해 9월에 측량을 진행했다.

이상의 자료에서 『원도』로 필지별 위치를 파악했으며, 『토지조사부』로 필지 면적과 토지 소유자를 확인했고, 『토지대장』으로 필지별 과세가격을 파악했다. 다만 1910년대에 작성된 『토지대장』은 도창리, 매화리, 미산리, 안현리, 은행리, 금이리 자료만 남아 있으며, 그중에서도 한국전쟁, 경지정리 등으로 인하여 자료가 유실된 필지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과세가격과 비옥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에 충분한 양(면적 기준 대상지역의 70%)의 자료가 남아 있었다.

19 이영호(2018), pp. 200-202.

20 「안산 석장둔토 환급」, 『매일신보』, 1911.2.17.

21 시흥시청 측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토지대장』 원본 촬영 및 공유를 금지하였다. 독자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본 연구 대상 토지는 앞서 언급한 9개 리 경작지 중 토지조사부에 지목이 논으로 설정된 필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간척지 영역은 구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간척지 영역과 구릉의 경계구간에 논과 밭이 혼재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논과 밭을 모두 분석대상으로 할 경우 경계구간 대상 선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영역 내 대부분 토지 지목이 논이므로 논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실제로 조선시대에 석장둔 일대 간척지 영역만을 대상으로 작성된 양안 기록을 보면, 안산 영역(간척지 남쪽 영역)은 전(田) 면적이 59부 3속에 불과한 반면, 답(畓) 면적은 12결 50부 5속으로 전의 21배에 달했다. 인천 영역(간척지 북쪽 영역)은 전 면적이 1결 5부 2속인 반면, 답 면적은 36결 63부 1속이었다. 답 면적이 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것이다.²² 또한 지형상 간척지는 논 형성에 유리한 측면이 있었으며, 조선후기에 저술된 농서에서도 해안 지역 농토에 논 조성을 권장하는 내용이 있었다.²³

이상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필지는 총 1,636건, 면적은 185만 6,826평이다. 이 중 『토지대장』에서 과세가격을 파악할 수 있었던 필지는 총 1,164건, 면적은 129만 3,815평이다. 즉, 대상 토지 중 면적 기준 70%가량의 과세가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상 토지가 간척지인 만큼, 바다와의 거리, 즉 호조둑과의 거리는 비옥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이에 다음의 기준으로 해당 필지에 거리 지수를 매겼다. 간척지 전체를 1910년대 작성된 『원도』에 따라 총 64개 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호조둑이 포함된 구역에는 0점을 부여했다. 그리고 0점을 받은 구역의 북쪽, 서쪽, 대각선 인접 구역에 1점을 부여했다. 이후에는 다음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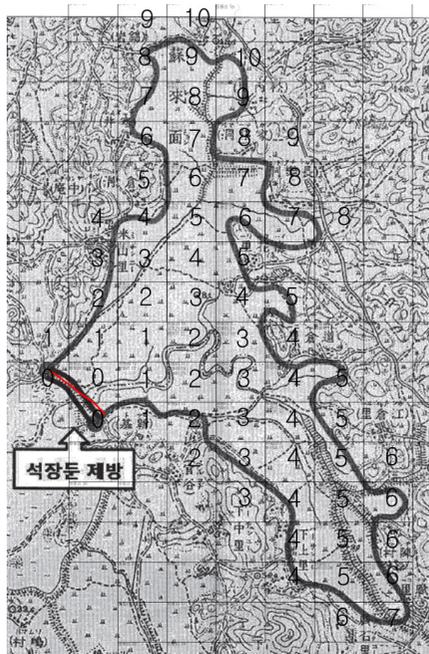
22 이영호(2018), p. 99.

23 송찬섭(1985), p. 250.

1) 0점을 받은 구역의 북쪽과 서쪽으로 한 구역을 넘어갈 때마다 1점을 추가하여 부여한다. 예시) 0점에 인접한 북쪽 구역에 1점 부여, 그다음 북쪽 구역에 2점 부여.

2) 대각선 방향 구역인 경우, 인접한 동쪽과 남쪽 방향 구역의 점수 중 더 높은 쪽의 점수를 부여한다. 두 구역 점수가 동일한 경우 1점을 추가하여 부여한다. 예시) 동쪽 구역은 2점, 남쪽 구역은 1점인 경우 해당 구역에 2점 부여. 동쪽과 남쪽 구역 모두 2점인 경우 해당 구역에 3점 부여.

이 기준을 바탕으로 각 구역에 0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 점수를 호조둑으로부터 각 구역까지의 거리를 반영하는 지수로 상정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만든 구역 지도를 보면 [그림 3]과 같다.



* 간척지 영역은 이영호(2018), p. 77 재인용.

** 거리 지수 표시선 및 거리 지수: 필자 강조.

[그림 3] 석장둔 인근 간척지 거리 지수별 구역 지도

3. 과세가격과 비옥도

과세가격을 파악할 수 있었던 석장둔 인근 간척지 토지의 전체 평당 과세가격 평균은 12.1원(圓)이었다. 이 과세가격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적은 금액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27년 서울 동부지역 토지가격 분포를 살펴보면, 대상 필지 4,668개 중 35%를 차지하는 농경용 토지 평당 가격은 평균 1.68원이었다.²⁴ 간척지 토지장부가 작성된 시점이 1910년대 초이며, 서울 동부지역 토지가격 분포 자료는 그보다 10여 년 후인 1927년이 었다. 따라서 서울 동부지역 토지가격 자료가 작성될 당시의 화폐 가치는 간척지 토지장부가 작성될 때의 가치보다 하락했을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석장둔 인근 간척지 논외의 평균 가격은 서울 일대 경작지보다 높은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석장둔 인근 간척지 토지는 논만을 대상으로 하여 평균가가 높게 나왔고, 서울 동부지역의 경우 다양한 지목의 토지가 섞여 있어 평균가가 낮게 나왔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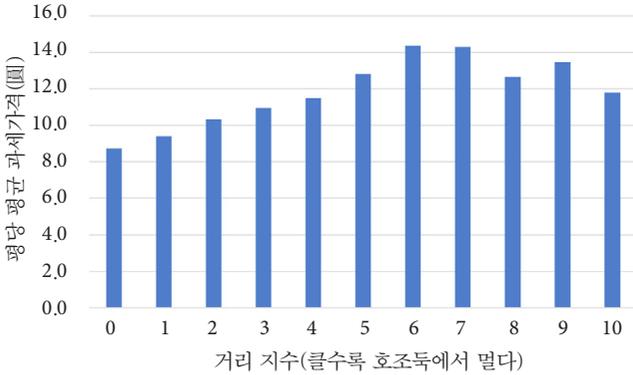
그리고 간척지 토지의 필지별 가격 차이가 서울 동부 토지에 비해 크지 않았다. 서울 동부 농경용 토지 평당 최대 가격은 130원에 달하였다.²⁵ 반면 석장둔 인근 간척지의 논은 평당 과세가가 최대 19.8원이었다. 석장둔 인근 간척지 평균 평당 과세가격이 12.1원임을 감안하면, 이 지역의 과세가격 편차가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과세가격에는 비옥도가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방죽과 맞닿은 지역의 필지들, 즉 바다와 가까운 필지의 평당 과세가격은 평균가에 비해 낮은 반면, 간척지 안쪽에 있는 토지들은 높은 과세가격을 보였다(그림 4).

거리 지수가 0, 1인 필지들, 즉 바다에 맞닿아 있거나 가까운 필지의 평균 평당 과세가격은 10원을 채 넘기지 못하였다. 평균 평당 과세가격이 가

24 유슬기·김경민(2022), 「1920년대 경성 동부지역 토지가격 결정 요인 연구」, 『국토연구』 115, pp. 53-55.

25 유슬기·김경민(2022), p. 54.



[그림 4] 거리 지수별 평당 평균 과세가격

장 높은 필지는 거리 지수 6과 7에 해당하는 토지, 즉 간척지 한복판에 있는 토지였다. 평균 평당 과세가격이 14원을 넘겼다.

그런데 바다와 가장 멀리 있는 거리지수 8~10의 토지는 오히려 11~13원 수준으로 다소 떨어졌다. 그 이유는 석장둔 인근 간척지의 지형을 보면 추측할 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석장둔 인근 간척지 지형은 구릉과 산이 눈을 둘러싼 일종의 분지와 비슷하다. 따라서 바다와 멀어지면 눈이 펼쳐지다가 다시 산과 구릉이 가로막게 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간척지 안쪽으로 갈수록 다시 과세가격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비옥도와 과세가격 간 관계에서 한 가지 더 고려할 점은 간척지 내 하천 및 수로에 접한 논외의 가격이다. 1910년대에 작성된 『원도』 및 지형도를 참고하면, 1910년대 석장둔 인근 간척지에 총 3개의 수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²⁶

이는 ‘한국병합’ 전인 1902년 현지 경작자들이 내장원에 올린 소장 내용에도 확인된다([그림 5]).²⁷

26 『朝鮮五萬分之一地形圖』, 인천(서울8호).

27 『京畿各郡訴狀』(규 19148); 양선아(2011), 「갯논의 관리와 전통 기술」, 『민속학연구』 29,



* 화살표: 필자 강조

[그림 5] 일제시대 지형도에 표기된 호조дук 인근 수로

〈인천부 전반면 매착리 석장둔민 윤성집(尹聖集), 윤학보(尹學甫),
이정서(李正瑞) 등〉

본 둔전은 인천 안산 사이에 있는 소금기가 많은 땅 주변에 있습니다. 바다와 접하여 수문(漕渠)이 세 개가 있는데, 두 개는 양변에 위치한 까닭에 인천 부와 안산군에서 각각 감고(監考)를 한 명씩 두어 급료를 주고 있습니다. 한 개는 가운데에서 물이 흐르는 곳을 바로 대하고 있어서 바닷물이 더욱 거세게 부딪히고 큰비에는 물이 범람하는 일이 많아서, 매년 농사철이 되면 한 달 사이에는 그름과 보름에 둑(堤)을 쌓고 하루 동안에는 아침저녁으로 둑을 막았다가 다시 터야 합니다. (후략)

* 진하게 표시된 부분: 필자 강조

이 소장에 따르면, 간척지로 물이 드나드는 수문이 총 3개가 있었다. 따라서 석장둔 간척지 내에도 3개의 물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양변

[표 1] 논 평당 평균 과세가격(파악 가능 지역 한정)

지역	평당 평균 과세가격(圓)
간척지 전역	12.1
가장 위쪽 물길에 인접한 곳	9.2
가운데 물길에 인접한 곳	8.2
물길과 접하지 않은 곳	12.3

에 한 개씩 수문이 있고, 가운데에 수문이 한 개가 있다고 묘사한 소장 내용은 일제시대 지도의 모습과 흡사하다. 다만 현재는 경지정리와 하천 직선화 사업이 이루어진 후이므로 간척지 내에 물길이 두 갈래(은행천, 보통천)만 남아 있다. 세 갈래 물길이 어떤 방식으로 바뀌어 두 갈래로 되었는지 현재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리고 소장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물길 주변은 바닷물이 닳치고 큰비에 범람하는 일이 많아 농사에 어려움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과세가격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확보한 『토지대장』 자료 중 가장 위쪽 물길과 가운데 물길 주변 논은 평당 과세가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비교해 보면 [표 1]과 같다.²⁸

이 표를 보면, 물길에 접한 토지는 앞서 살펴본 바다와의 거리 지수 0 또는 1에 해당하는 토지와 비슷한 낮은 과세가격을 나타냈다. 반면 물길과 인접하지 않은 토지는 간척지 평균 과세가격과 비슷한 값을 나타냈다. 이를 볼 때, 농사하기 어려운 물길 주변 논 상황이 과세가격에도 반영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1910년대 작성된 최초의 『토지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던 과세가격은 바다와 산, 구릉에 가까울수록, 그리고 물길에 가

28 물길의 범위는 바다로부터 이어진 큰 물줄기가 비슷한 너비로 갈라져 지도상 분류를 파악하기 어려운 지점까지이다. 해당 범위의 물길에 조금이라도 접해 있는 논이 분석 대상이다.

까울수록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를 볼 때, 과세가격은 논 비옥도와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4. 토지소유 현황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할 때, 주로 서울에 사는 부채지주와 그 외 지주를 비교하여 분석했다. 서울은 조선시대와 일제시대에 걸쳐 수도 역할을 하였으며, 권력자와 부자들이 모인 곳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각 지주들의 구체적인 재산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이상, 서울에 사는 부채지주가 다른 지주들보다 더 부유하였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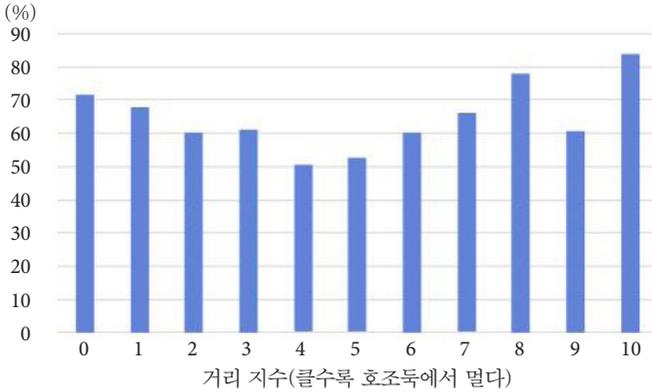
간척지 소유주 파악에 앞서 고려할 사항은 국유지, 즉 조선총독부 소유지이다. 석장둔 인근 간척지 중 134,560평, 즉 7.24%의 논이 국유지였다. 이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았을 때 넓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조선시대 한성 내에 해당하는 5개 권역(동부, 서부, 남부, 중부, 북부)의 1917년 국유지 면적은 전체 토지 면적의 1.3%(중부)~11.5%(서부)였다.²⁹

또한 앞서 서술한 대로, 석장둔 인근 간척지의 경우 『토지조사부』 작성 시점에 소유권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토지대장』 확인 결과 국유지인 필지에 과세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처럼 관련 자료 작성 당시 국유지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 상황을 확인할 수 없으며, 국유지 지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분석 대상을 민유지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해당 토지를 소유한 지주는 총 315명이며, 이 중 서울 지주가 66명이었다. 즉, 전체 지주 숫자 중 20.9%가 서울 지주였다. 그런데 이들이 소유한

29 전병재·조성윤(1995), 「일제 침략기 서울부 주민의 토지 소유와 변동」, 『서울학연구』 6, p. 29.



[그림 6] 거리 지수별 서울 지주 논 소유 비율(국유지 제외)

논 면적은 103만 4,280평으로, 국유지를 제외한 논의 60.1%에 달한다. 즉, 명수로 5분의 1 남짓인 서울 지주들이 토지 과반을 소유한 것이다.

구체적인 소유 상황을 들여다보면 소유 양극화 현상도 보인다. 면적 기준으로 많은 토지를 가진 상위 20% 지주(63명)는 하위 20% 지주(63명)보다 땅을 102.5배 더 많이 소유하였다. 상위 63명은 국유지를 제외한 전체 토지의 71.5%를 소유한 반면, 하위 63명은 0.01%에 해당하는 토지만 소유하였다.³⁰ 특히 양극화 현상에서 서울 지주들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상위 63명 지주 중 37명이 서울 지주인 반면, 하위 20% 지주 63명 중 단 5명만이 서울 지주였다.

과세가격을 파악할 수 있었던 토지 중 서울 지주들이 가진 토지의 평당 평균 과세가격 11.9원이었다. 이는 전체 평균 가격인 12.1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실제로 각 거리 지수별 서울 지주 논 소유 비율(국유지 제외)을 보면, 모든 지수에 해당하는 토지에서 서울 지주 소유지 비율이 50%를 넘겼다. 즉, 바다에서 가깝든 멀든 서울 지주가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다([그림 6]).

30 한 필지를 여러 지주가 가진 경우, 해당 필지를 각 지주들이 동일하게 나눠 가진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했다.

상위권 지주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지주들의 특성이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 토지를 많이 가진 상위 1위부터 13위까지의 지주 13명이 모두 서울 지주이며, 현지 지주는 14위에 처음 등장(申泰東, 22057.79평)하였다. 명수로 4%에 불과한 상위권 서울 지주 13명이 가진 논은 62만 5,492평이었다. 이는 국유지를 제외한 논 면적의 36.3%에 달하는 면적이다. 특히 논 5만 평 이상을 가진 지주는 단 3명이었는데, 이들이 가진 논 면적은 23만 8,305평으로 국유지를 제외한 논 면적의 13.8%에 달했다.

이와 같은 양상은 간척지가 아닌 인접 지역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비교를 위해 인접 지역이면서 간척지가 아닌 부천군 소래면 대야리(현 시흥시 대야동) 『토지조사부』에 기록된 토지 중 논을 분석하였다. 국유지를 제외한 논 면적은 14만 9,674평이었다. 논을 소유한 지주는 총 46명이었다. 이 중 많은 토지를 가진 상위 20% 지주(9명)가 하위 20% 지주 9명에 비해 24배 토지를 더 많이 가졌다. 이는 격차가 102배에 달하는 간척지 양상보다 양극화 정도가 낮다. 또한 대야리 논을 가진 서울 지주는 14명으로 지주 수의 30% 정도 되었는데, 이들이 가진 토지는 국유지를 제외한 전체 논 면적의 48.7%(7만 2,870평)였다. 20%의 서울 지주가 국유지를 제외한 논 면적의 60%를 가진 간척지 양상보다 양극화 정도가 낮았다.

조선시대에 작성된 석장둔 양안이 남아있지만, 1910년대와 조선시대 소유 양상을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조선시대에 작성된 양안에는 실소유자를 기록한다는 원칙이 없거나 잘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이름이 양안에 자주 등장하였다.³¹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이상 비교분석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토지조사부』와 이전 토지대장인 양안과의 비교 작업을 하지 않았다.

31 김소라(2021), pp. 197-198.

5. 최상위 지주들

간척지 논 5만 평 이상을 소유한 최상위 지주 3명은 당대 이름난 권력 자이거나 재력가였다. 1위는 익히 알려진 인물인 순헌황귀비 엄씨(『토지조사부』에 嚴妃로 기재)로, 9만 5,816평을 소유하였다. 순헌황귀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석장둔 인근 간척지에 많은 토지를 갖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토지조사부』에 남은 기록 수정 흔적을 볼 때 순헌황귀비 소유 토지 일부분의 획득 과정을 추론할 수 있다. 일부 순헌황귀비 소유지의 경우, 소유자가 순헌황귀비의 궁호인 경선궁(慶善宮)으로 기록되었다가 엄씨로 수정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그림 기). 이를 볼 때 일부 토지의 경우 순헌황귀비의 궁방인 경선궁에 소속된 땅이 모종의 과정을 거쳐 개인 자산으로 편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³² 다만 현재 이를 증빙하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

土地調査簿		地番	地目	地積	地畝	住戶	所有	氏名	備考
一	一	番	田	一〇	一〇	京畿道 西郊 吳山	有	嚴妃	
二	二	番	田	二〇	二〇	京畿道 西郊 吳山	有	嚴妃	
三	三	番	田	三〇	三〇	京畿道 西郊 吳山	有	嚴妃	
四	四	番	田	四〇	四〇	京畿道 西郊 吳山	有	嚴妃	
五	五	番	田	五〇	五〇	京畿道 西郊 吳山	有	嚴妃	
六	六	番	田	六〇	六〇	京畿道 西郊 吳山	有	嚴妃	
七	七	番	田	七〇	七〇	京畿道 西郊 吳山	有	嚴妃	
八	八	番	田	八〇	八〇	京畿道 西郊 吳山	有	嚴妃	
九	九	番	田	九〇	九〇	京畿道 西郊 吳山	有	嚴妃	
一〇	一〇	番	田	一〇〇	一〇〇	京畿道 西郊 吳山	有	嚴妃	
一一	一一	番	田	一一〇	一一〇	京畿道 西郊 吳山	有	嚴妃	

(土地調査簿用紙) 甲

[그림 기] 부천군 소래면 미산리(현 시흥시 미산동) 『토지조사부』 첫 면. 타원 표시는 수정 흔적임 (필자 강조).

32 이영호(2018), p. 236.

기 때문에 편입 여부나 정확한 편입 과정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토지조사부』 작성이 완료된 시점에 순헌황귀비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관련인이 토지를 상속했을 가능성도 있다.

2위는 윤규섭(尹奎燮)으로, 7만 1,008평을 소유하였다. 『토지조사부』에 윤규섭 주소가 “경성부 중부 장통방(京城府 中部 長通坊)”으로 기록되어 있다. 『대한제국관원이력서』 8책에 “한성 중서 장통방(漢城 中署 長通坊)”을 주소로 가진 동명 인물이 확인되므로, 이 인물이 간척지에 땅을 확보한 윤규섭과 동일 인물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역과방목』과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윤규섭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모두 왜학(倭學)을 전공하였다. 윤규섭은 헌종 13년(1847)생이며, 고종 17년(1880) 증광시 역과 한학(漢學)에 급제하였다. 역과 급제 후 기기국 위원(機器局委員), 교섭주사(交涉主事), 중추원삼등의관(中樞院三等議官), 한성 우체사장(漢城郵遞司長), 농상공부참서관(農商工部參書官), 음죽군수(陰竹郡守), 임피군수(臨陂郡守), 봉상제조(奉常提調)를 역임했다. 다만 『승정원일기』에 기재된 윤규섭 관련 기록에 따르면, 윤규섭은 음죽군수와 임피군수, 봉상제조를 임명받은 직후 사임했다.³³ 따라서 이는 실제 직책이 아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그는 1896년 김종한(金宗漢), 안경수(安暉壽), 이완용(李完用) 등 전현직 관료들과 함께 조선은행 설립 시에 발기인으로 참여했다.³⁴ 이로 미루어 볼 때, 그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력을 갖춘 인물로 보아도 무방하다.

3위는 전명기(全命基)로, 6만 5,418평을 소유하였다. 『토지조사부』에 전명기 주소가 “경성부 동부 연화방 이현동(京城府 東部 蓮花坊 梨峴洞)”으로 기록되어 있다. 전형필(全鏊弼) 평전에 따르면, 전형필 집안은 증중부인 전개훈 대부터 현재 종로 4가 인근인 배오개(梨峴)에 커다란 기와집을 짓고 살았

33 『承政院日記』 고종 42년(1905) 4월 28일; 고종 43년(1906) 4월 18일; 고종 44년(1907) 2월 17일.

34 『독립신문』 건양 원년(1896) 6월 27일.

다고 한다. 그리고 전형필의 숙부이자 양부인 전명기도 이 집에서 살았다.³⁵ 따라서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전명기와 전형필의 숙부이자 양부인 전명기는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

『승정원일기』와 「간송 평전」에 따르면, 전명기는 경기관찰부주사(京畿觀察府主事), 서경풍경궁참서관(西京豊慶宮參書官) 등을 역임했다.³⁶ 그리고 전명기의 집안은 19세기 초부터 서울에서 이름난 재력가로 알려져 있었다. 즉, 전명기는 높은 관직에 오르지 못했으나, 시흥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기 어렵지 않을 정도로 많은 재산을 가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자료 부족으로 인해 윤규섭과 전명기가 간척지에 대규모로 토지를 소유한 과정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이들이 중앙 관직을 가진 적이 있고 재력을 갖추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이들이 서울 인근 간척지 토지를 사 모으는 과정에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순현황귀비와 윤규섭, 전명기가 가진 땅은 간척지에서 비교적 좋은 위치에 있었을까? 앞서 과세가격과 비옥도 간 관계를 통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과세가격은 비옥도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간척지 내에서 바다 및 구릉과 거리를 둔 곳, 즉 간척지 한복판 땅의 과세가격이 가장 높았고, 이곳의 비옥도가 다른 곳보다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들이 가진 땅의 과세가격 평균과 소유지 분포를 살펴보겠다.³⁷

우선, 과세가격 파악 가능한 논 중 순현황귀비, 윤규섭, 전명기가 가진 땅의 평당 평균 과세가격은 [표 2]와 같다.

35 이홍우(1996), 「간송 평전」, 『간송 전형필』, 보성중고등학교, pp. 146-149.

36 『承政院日記』 고종 35년(1898) 2월 22일; 고종 43년(1906) 4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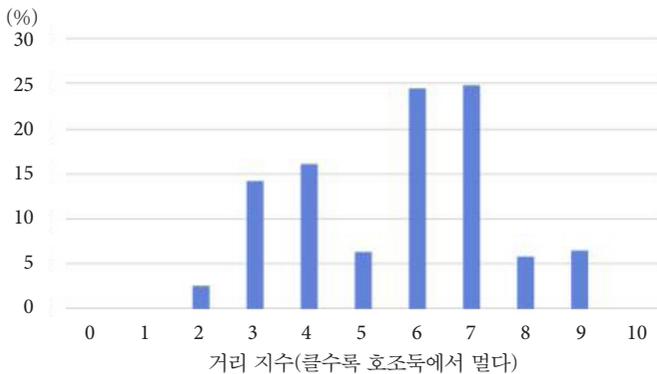
37 지주 대다수는 여러 구역에 걸쳐서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고 특정 위치에 토지를 모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지주와 소유 토지 상관관계를 밝히기 어려웠다. 다만 토지를 대규모로 가지고 있는 최상위권 지주의 경우, 다양한 거리 지수에 해당하는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부득이하게 5만 평 이상을 소유한 최상위권 지주의 토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표 2] 최상위 지주 논 평균 과세가격(파악 가능 토지 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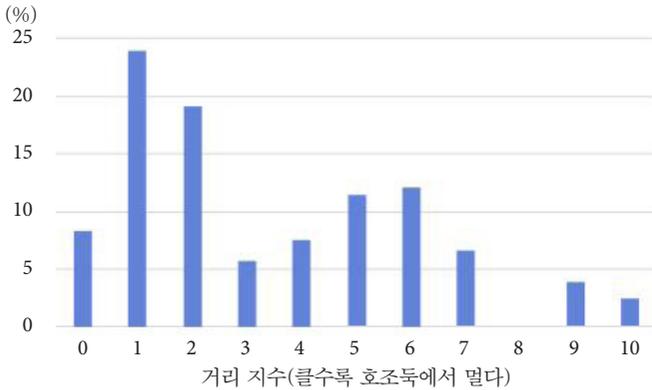
소유지	평당 평균 과세가격(圓)
순헌황귀비 엄씨 논	12.6
윤규섭 논	11.7
전명기 논	10.1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간척지 전역의 평당 평균 과세가격은 12.1원이며, 이 중 서울 부재지주가 가진 땅의 평균 과세가격은 11.9원이었다. 그런데 해당 지역에서 가장 많은 땅을 가진 순헌황귀비 엄씨의 논 평균 가격은 서울 부재지주 논 평균가보다 다소 높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땅을 가진 윤규섭의 논 평균 가격은 서울 부재지주 논 평균가와 비슷하였다. 반면, 세 번째로 많은 땅을 가진 전명기의 논 평균 가격은 서울 지주 논 평균가보다 2원 가까이 낮았다.

이와 같은 과세가격 차이는 간척지 내 소유지 분포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거리 지수 6 또는 7의 평당 평균 과세가격이 가장 높았고, 바다나 구릉에 가까울수록 평균가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염두에 두고 각 지주의 소유지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8]과 같다.



[그림 8] 순헌황귀비 소유지 분포(도합 100%)



[그림 9] 윤규섭 소유지 분포(도합 100%)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순헌황귀비 소유지 중 거리 지수 6과 7에 해당하는 토지가 가장 많았는데, 그 비율은 합쳐서 절반에 육박하였다. 즉, 순헌황귀비는 간척지 내에서도 비옥도가 비교적 높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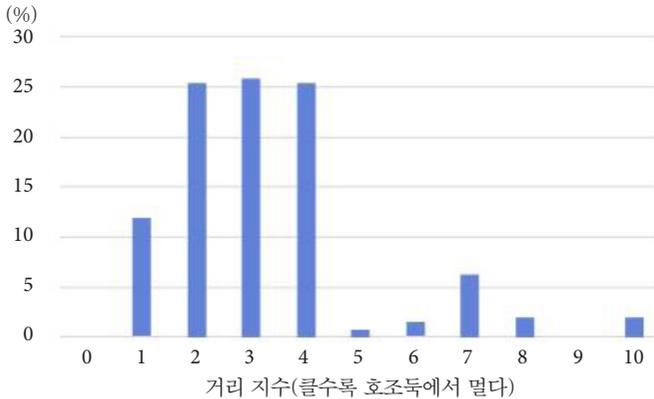
두 번째로 많은 논을 가진 윤규섭의 소유지 분포는 [그림 9]와 같다.

윤규섭 소유지 양상은 순헌황귀비 소유지 양상과 확연히 다르다. 윤규섭은 바다에 접한 지수 0의 토지도 5% 이상 가지고 있었으며, 바다에서 비교적 가까운 지수 0~2의 토지를 합치면 소유지의 절반을 넘었다. 다만 비교적 비옥한 토지인 지수 4~7의 토지도 30% 이상 가지고 있었다. 척박한 토지와 비옥한 토지를 함께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많은 논을 가진 전명기의 소유지 분포는 [그림 10]과 같다.

앞선 두 지주에 비해 전명기가 가진 토지는 바다에 가까운 곳에 집중되어 있었다. 평당 평균 과세가격이 간척지 전체 평균가에 미치지 못하는 거리 지수 4 이하의 토지가 소유지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전명기가 가진 토지는 비교적 척박한 토지였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순헌황귀비에게 속한 토지의 양과 질이 모두 윤규섭과 전명기의 토지보다 많고 좋았다. 소유한 토지 분포가 신분이나 권



[그림 10] 전명기 소유지 분포(도합 100%)

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순헌황귀비는 당대 권력자였으며 그의 재산을 관리하는 공방이 있었다. 반면 윤규섭은 역관 출신이며 상업으로 재력을 축적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나, 실제 직임만 놓고 보면 참서관이 가장 높은 직임이었다.³⁸ 전명기 역시 중앙정부 직책을 가지고 있었으나, 순헌황귀비의 권력에 비할 바는 아니었을 것이다. 게다가 『토지조사부』에 공호가 기재된 흔적도 있음을 미루어 볼 때, 순헌황귀비의 권력이 토지 소유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6. 결론

누구나 좋은 땅을 가지고자 할 것이지만, 그 기회는 공평하게 오지 않을 수 있다. 이때 누가 그 기회를 더 많이 누릴 수 있을까? 본 연구는 간척지라는 공간을 빌려 이를 간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간척지는 소금기가 많은 토질 특성상 좋은 땅과 좋지 않은 땅을 다른 지역보다 쉽게 가를 수

38 이승렬(2007), 『제국과 상인: 서울·개성·인천 지역 자본가들과 한국 부르주아의 기원, 1896~1945』, 역사비평사, p. 80.

있는 곳이었다. 또한 석장둔 인근 간척지는 지목이 대체로 통일되어 있고 지역이 구릉에 둘러싸여 있어 지역을 한정하여 분석하기가 쉬웠다. 우선 바다와 가까울수록, 그리고 물길에 가까울수록 소금기와 짙은 범람이 농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최근까지도 이어지는 문제였다. 현지인의 증언과 과거 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병합’ 직후 만들어진 문서를 살펴볼 때 이곳은 부유한 서울 부재 지주들이 대규모로 토지를 가진 공간이었다. 자료 부족으로 인하여 그들이 어떻게 이곳에 많은 땅을 갖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다만 석장둔은 18세기부터 조선 정부 주도로 만들어졌다. 그 이후 국방을 비롯한 여러 기관이 이를 절수받거나 구입하는 방식으로 수조권 및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간척지 조성 초기부터 부재지주들이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왕왕 있었다. 이를 염두에 둘 때, 정부 기관과 가깝고 부유한 서울 사람들이 땅을 가질 기회를 더 많이 얻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일제시대 자료를 통하여 서울 지주들이 더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다만 간척지가 조성된 시점의 소유자들과 일제시대 초기 소유자들의 연관성은 자료 부족으로 인하여 확인하기 어려웠다.

서울 지주들은 척박한 땅과 비옥한 땅을 가리지 않고 간척지 내의 땅을 광범위하게 가지고 있었다. 서울 지주 중에서도 더 많은 토지가 소수에게 편중되어 있었다. 서울 지주 13명이 가진 논은 간척지 전체 논 36.3%였으며, 그중에서도 최상위 지주 3명은 전체 논 14%에 달하는 땅을 가졌다. 이러한 편중 양상은 인근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석장둔 인근 간척지에 훨씬 심하게 드러났다. 이 간척지가 유독 그런 특징을 보이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역사적으로 정부 기관과 연관이 깊은 지역 특성 때문일 수도 있다. 아니면 재력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토질이 다른 지역에 비해 좋지 못한 간척지라도 소유할 여유가 있었기 때문일 수 있다.

최상층 지주들 사이에서도 소유 격차가 벌어졌다. 당대 최고 권력자 중 한 명인 순헌황귀비는 다른 지주보다 더 비옥한 땅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었

다. 반면 재산은 있지만 권력은 순헌황귀비에 비하지 못했던 지주들은 비교적 험한 땅을 가져갔다.

석장둔 인근 간척지의 '한국병합' 직후 소유상황은 구한말 소유상황을 반영하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지역을 소유한 대지주는 대부분 서울에 사는 부재지주이며, 최상위 지주들은 대한제국기 권력자이거나 권력이 있는 인물들이었다. 이는 간척지 조성 초기부터 부유한 사람들이 쉽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던 환경, 석장둔 인근 간척지에 산재한 공장토나 둔토가 구한말 역둔토 분급 과정에서 정리된 상황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현상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추후 석장둔 인근 간척지 소유권 이전 과정, 그리고 다른 간척지 사례와의 비교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자료

『京畿各郡訴狀』(규 19148)

『독립신문』

『매일신보』

『承政院日記』

『원도』(舊), 국가기록원 소장.

『朝鮮五萬分之一地形圖』

『토지대장』(舊), 시흥시청 소장.

『토지조사부』, 국가기록원 소장.

김형수(2019), 「시흥시, 300년 역사 '호조별' 가치·의미 공유한다」, 중부일보 웹페이지, 중부일보,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7581> (접속일: 2024.6.19.).

이기선·김정환·김현수(2013), 「길마재 이야기」, 『2013 사라져가는 자연마을 조사보고서: 호조별 동편 마을』, 시흥문화원.

小早川九郎 외(1960), 「제4표 지세납세의무자 면적별 인원(1921~1936)」, 『朝鮮農業發達史: 資料編』, 友邦協會.

논저

- 김건태(2018), 『대한제국의 양진』, 경인문화사.
- 김소라(2021), 「양안의 재해석을 통해 본 조선후기 전세 정책의 특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찬섭(1985), 「17·18세기 신전개간의 확대와 경영형태」, 『한국사론』 12.
- 양선아(2011), 「갯논의 관리와 전통 기술」, 『민속학연구』 29.
- 양선아(2010), 「개간과 토지이용」, 『시흥시사 5: 시흥 농촌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 시흥시사편찬위원회.
- 양선아(2007), 「조선후기 간척의 전개와 개간의 정치: 경기 해안 간척지 경관의 역사 인류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슬기·김경민(2022), 「1920년대 경성 동부지역 토지가격 결정 요인 연구」, 『국토연구』 115.
- 이승렬(2007), 『제국과 상인: 서울·개성·인천 지역 자본가들과 한국 부르주아의 기원, 1896~1945』, 역사비평사.
- 이영호(2018), 『토지소유의 장기변동: 경기도 시흥 석장둔의 250년 역사』, 경인문화사.
- 이태진(1986), 「16세기 연해지역의 연전 개발: 척신정치의 경제적 배경 일단」, 『한국사회사연구: 농업기술 발달과 사회변동』, 지식산업사.
- 이흥우(1996), 「간송 평전」, 『간송 전형필』, 보성중고등학교.
- 장시원(1989), 『일제하 대지주의 존재형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병재·조성윤(1995), 「일제 침략기 서울부 주민의 토지 소유와 변동」, 『서울학연구』 6.
- 차선헤(2007), 「근대적 개혁과 지방제도 변화」, 『시흥시사 3: 시흥의 근현대』, 시흥시사편찬회.

원고 접수일: 2024년 7월 15일, 심사완료일: 2024년 8월 6일, 게재 확정일: 2024년 8월 7일

ABSTRACT

Ownership Patterns of Reclaimed Land Near the Seokjang State Farm in the Early 1910s

Kim, Hanbit*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ownership situation of the so-called reclaimed land around the Seokjang State Farm within Siheung City during the 1910s. Through this work, the concentration of land ownership among a few landlord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oil fertility and land ownership status will be analyzed. The reclaimed land around the Seokjang State Farm is surrounded by the sea and hills, with most of the cultivated land being rice paddies. The abundance of related materials made it easy to verify the ownership situation in the 1910s. It was found that the taxation value of the land and its fertility had a correlation. Moreover, absentee landlords living in Seoul owned more than half of the reclaimed land area. Land ownership was concentrated among a few individuals, especially the Imperial Noble Consort Sunheon, who was a powerful figure at the time, owning the largest amount of land in the area, which was also more fertile compared to other landlords. When compared with the ownership patterns of neighboring areas that are not reclaimed land, this concentration of land ownership among a few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landlords appears to be a unique phenomenon in the reclaimed land around the Seokjang State Farm.

Keywords Siheung, Reclaimed Land, Seokjang State Farm, Hojo Dike, Hojo Plain, Absentee landlord, Fertility, Taxation Value of Land, Imperial Noble Consort Sunheon, Yun Gyuseop, Jeon Myeong-Gi

